

「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구역 지정으로 도로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가 안전한 공간에서 밤샘주차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(안 제3조)
 -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시장이 지정함
- 지정의 취소(안 제4조)
 - 사고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함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,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, 「주차장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3호에 의거한 공영차고지, 화물터미널 등 운송업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용이한 이와 비슷한 시설에 밤샘주차 허용은 차고지 확충을 위해 필요하나 금오산 대주차장 등 관광지에는 밤샘주차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.